

일 반 의 안

(6 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부서명	페이지
2026 - 65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인구교육과	1
2026 - 6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3
	①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인구교육과	3
	②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농업소득과	12
	③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20
2026 - 67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 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	문화예술과	28
2026 - 68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30
2026 - 6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6 - 7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형) 민간위탁 동의안		44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안 번호	2026 - 6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

2.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舊 작은학교 살리기)
- 나. 선정규모 : 도내 인구 감소지역 시·군(밀양시, 전 군부) 작은학교 2개소
- 다.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
- 라. 사업내용 : 임대주택 건립(LH) 및 빈집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학교 공간 혁신 및 지역특화 교육 등
- 마. 사업주체 : 도, 도교육청, 시·군, LH 경남지역본부
- 바. 사 업 비 : 개소당 15억원(도 5, 시군 5, 도교육청 5) * LH 사업비 별도
- 사. 신청현황 : 웅양초, 위천초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가. 2026. 6. 11. : 공모 신청서 제출(거창군 → 경남도)
- 나. 2026. 6. 19. : 현장 실사(경남도, 경남도 교육청)
- 다. 2026. 6. 26.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라. 2026. 6. 30. : 공모 선정 결과 통보(웅양초 선정)
- 마. 2026. 8. ~ : 사업 추진

4. 기대효과

- 가. 로컬유학을 통한 학생 유입과 학부모 동반 이주로 지역 활력 제고
- 나. 교육·주거·정주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모델 구축

붙임

위치도 (임대주택 건립 부지)

웅양초



○ 주소 : 웅양면 노현리 147, 148-1, 151-4

○ 면적 : 2,754㎡

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 위치도



사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6 - 6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	------	-------

1. 제안이유

-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로컬유학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공용공간 조성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 2) 총사업비 : 1,530.5백만원(특교세 1,000백만원, 군비 530.5백만원)
- 3) 사업기간 : 2025. 8. ~ 2026. 12.
- 4) 사업위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09-10
- 5) 주 요 내 용 : 로컬유학 거주 및 공용공간 조성(2층, 연면적 435.02㎡)
 - 1층 : 주민공동시설 1호(66.24㎡), 단독주택 2호(60.03㎡, 61.2㎡), 계단실 1호
 - 2층 : 단독주택 3호(66.24㎡, 60.03㎡, 61.20㎡), 계단실 1호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계					435.02	1,530,500		
취득	건축물	북상면 갈계리 1109-10	건물 1동 (지상2층)	435.02	1,530,500	2026. 9.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단독주택 5호, 주민공동시설 1호)	신축

다. 추진경과

- 1) 2025. 5.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
- 2) 2025. 8. ~ 11.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건축기획 용역 시행
- 3) 2025. 12.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공공건축 심의
- 4) 2026. 1. ~ 5.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1) 2026. 7.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 2026. 12. ~ : 로컬유학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 기대효과

- 1) 로컬유학을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2) 거창군 로컬유학 활성화로 교육도시 거창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붙임2】 참조

4. 관련도면 : 【붙임3】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4】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붙임1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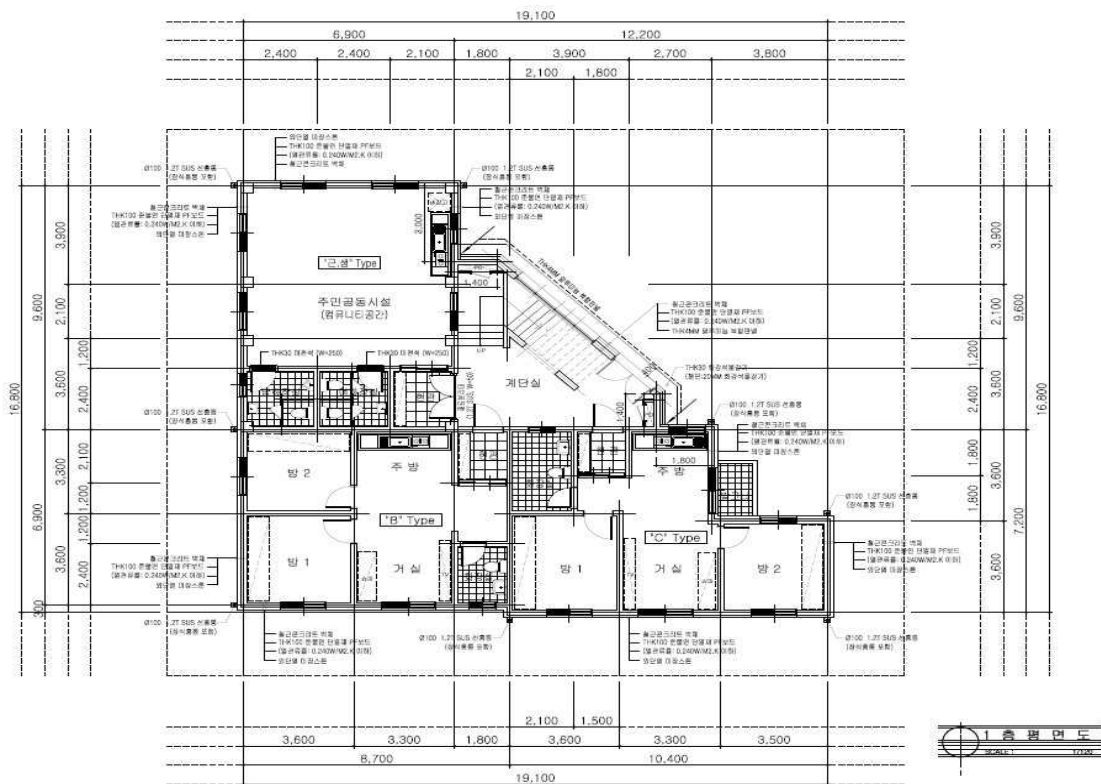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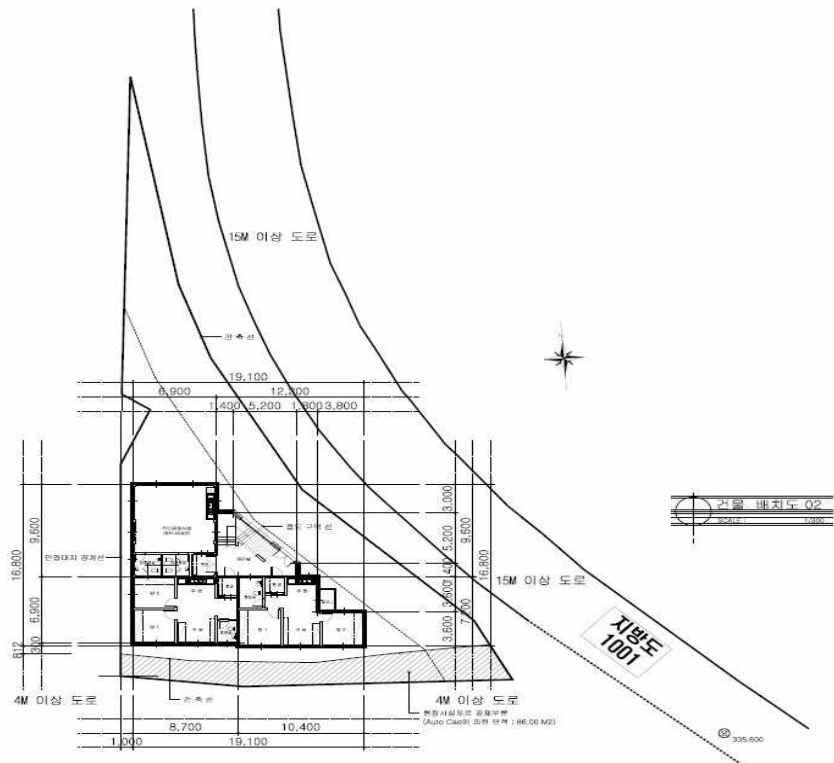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530.5	
공사비	• 공사비 : 1,348.5백만원 - 건축비 : $435\text{m}^2 \times 2,392\text{천원}^* = 1,040,502\text{천원}$ $\times 2026\text{년 표준건축비} : 2,392\text{천원}$ - 진출입 도로 조성, 조경, 예비비 등 : 307,998천원	1,348.5	
설계비 등	• 설계비 : 68백만원 • 건축기획 : 4백만원 • 현황측량(토목) : 5백만원	77	
부대비	• 부대비 : 5백만원	5	
자산 취득비	• 거주공간 싱크대 등 기본 구성 구입비 : 50백만원 - 거주공간 5호 $\times 10,000\text{천원} = 50,000\text{천원}$ • 공용공간 테이블 등 물품 구입 : 50백만원 - 공용공간 5호 $\times 10,000\text{천원} = 50,000\text{천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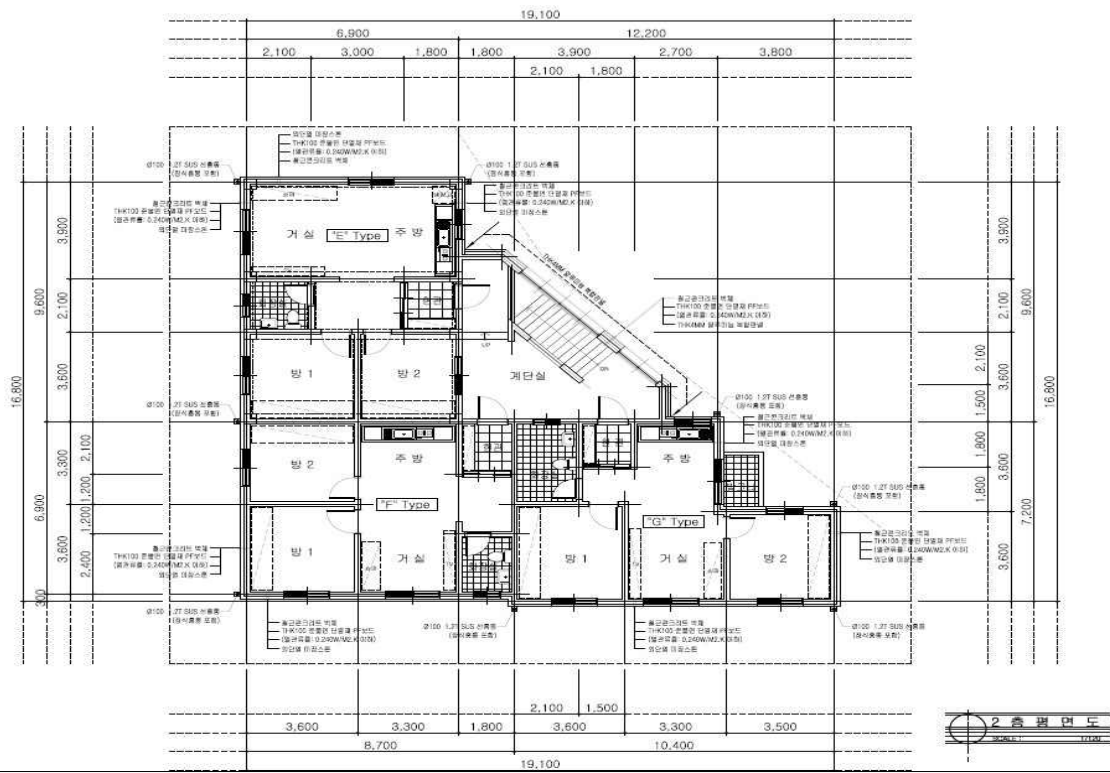


위 치 도(북상면 갈계리 1109-10번지)



현 장 사 진





2층 평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의안 번호	2026 - 66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②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담당부서	농업소득과
------------------------------------	-------------	--------------

1. 제안이유

- 가. 팔레트, 보관상자의 야외적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24년 경남도 안전점검 지적사항)
- 나. 기자재 창고 신축으로 작업공간 확보, 위생환경 및 물류 동선 효율화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 2) 사업위치 : 거창읍 대평리 1347, 서북부경남 거점APC
- 3)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 240, 군 960)
- 4) 사업기간 : 2026. 4. ~ 12.
- 5) 주요내용 : 기자재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신축(2,000㎡)
 - 부지면적 37,263㎡(토지 소유자 : 거창군)
 - 80m(길이) × 25m(폭) × 11m(기둥높이) / 가설건축물(막구조)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47	창고	2,000	1,200,000	2026. 12.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일반 공업 지역

다. 추진경과

- 1) 2025. 8. : 경남도지사 방문 시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건의
- 2) 2026. 2. :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사업계획서 제출
- 3) 2026. 6. : 실시설계

라. 향후계획

- 1) 2026. 8. : 사업자 선정 및 착공
- 2) 2026. 12. : 사업 준공

마. 기대효과

- 1) 전국 5대 사과주산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과 물류 효율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2) 보관상자, 팔레트 등 기자재 운영 보관 효율화로 안전사고 예방
 - * 8톤 화물차 진입 가능 및 내부 팔레트 랙 설치로 보관 효율 증대
 - * 보관상자 55,000개, 팔레트 500개, 철제팔레트 450개 적재 가능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붙임2】 참조

4.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붙임1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200	
공사비	• 건축공사비 : 950백만원 - 건축비 : 475천원×연면적(2,000㎡)= 950,000천원 * 2025년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막구조/창고시설) ㎡ 당 단가 = 250천원 ~ 2,000천원 ※ 가설막구조는 건축사양(기초, 높이, 적설/풍하중, 문/환기)에 따라 편차가 큼	1,134	
	• 부지조성공사비 : 184백만원 - 부지조성공사비 : 46천원×부지면적(4,000㎡)=184,000천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단위당 표준공사비 준용		
설계비	• 설계비 : 53백만원 - 설계비 : 총공사비(1,134,000천원)×4.69%=53,184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준용	53	
부대비	• 건축감리비 : 13백만원 - 총공사비(1,134,000천원)×1.16% = 13,154천원 *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적용	13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위 치 도(거창읍 대평리 1347)



현 장 사 진



신축예시(기자재 보관창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

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담당부서	체육시설사업소
-------------------------	------	---------

1. 제안이유

○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한 규모 확장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시설 안정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2) 사 업 비 : 800백만원(군비)
- 3)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1, 102
- 4) 사업기간 : 2026. 1. ~ 2027. 5.
- 5)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9홀 조성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2,601㎡	2,601㎡	31,819			
취득	토지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1	답	1,610㎡	1,610㎡	21,413	'26. 7.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 관리 지역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2	전	991㎡	991㎡	10,406			

다. 추진경과

- 1) 2024. 8. ~ 12. : 마리면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 검토
→ 마리면 월계리 1276-31번지(국유지) 최종 결정
- 2) 2025. 4. ~ 11. :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 3) 2026.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4) 2026. 2. ~ 3. : 부지 내 지장물(임목, 고철 등) 철거 완료
- 5) 2026. 4. 10. : 실시설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 인근 사유지 2필지(마리면 월계리 101, 월계리 102) 매입을 통한
파크골프장 면적 확장 건의
- 6) 2026. 5. 7. :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사전의견조회 및 절차안내

라. 향후계획

- 1) 2026. 7. ~ 9. : 토지 손실보상협의
- 2) 2026. 7.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체육시설사업소→건설교통과)
- 3) 2026. 8. ~ 9. : 제2회 추경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4) 2026. 10. ~ : 사업 착공
- 5) 2027. 5. : 사업 준공

마. 기대효과

- 1) 여유부지 확보로 코스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성 확보
- 2) 휴게공간(벤치, 그늘막 등)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3) 수목 식재 공간 확보를 통한 자연친화적 경기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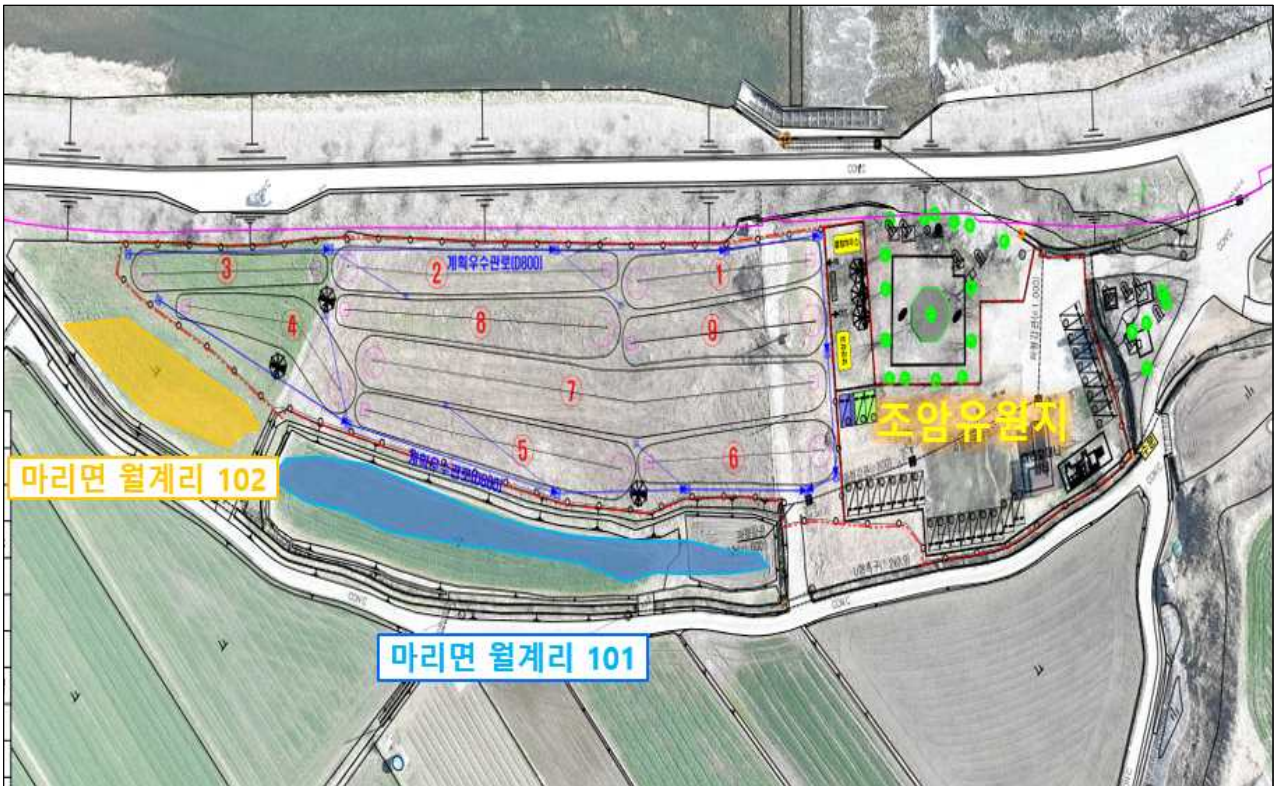
4.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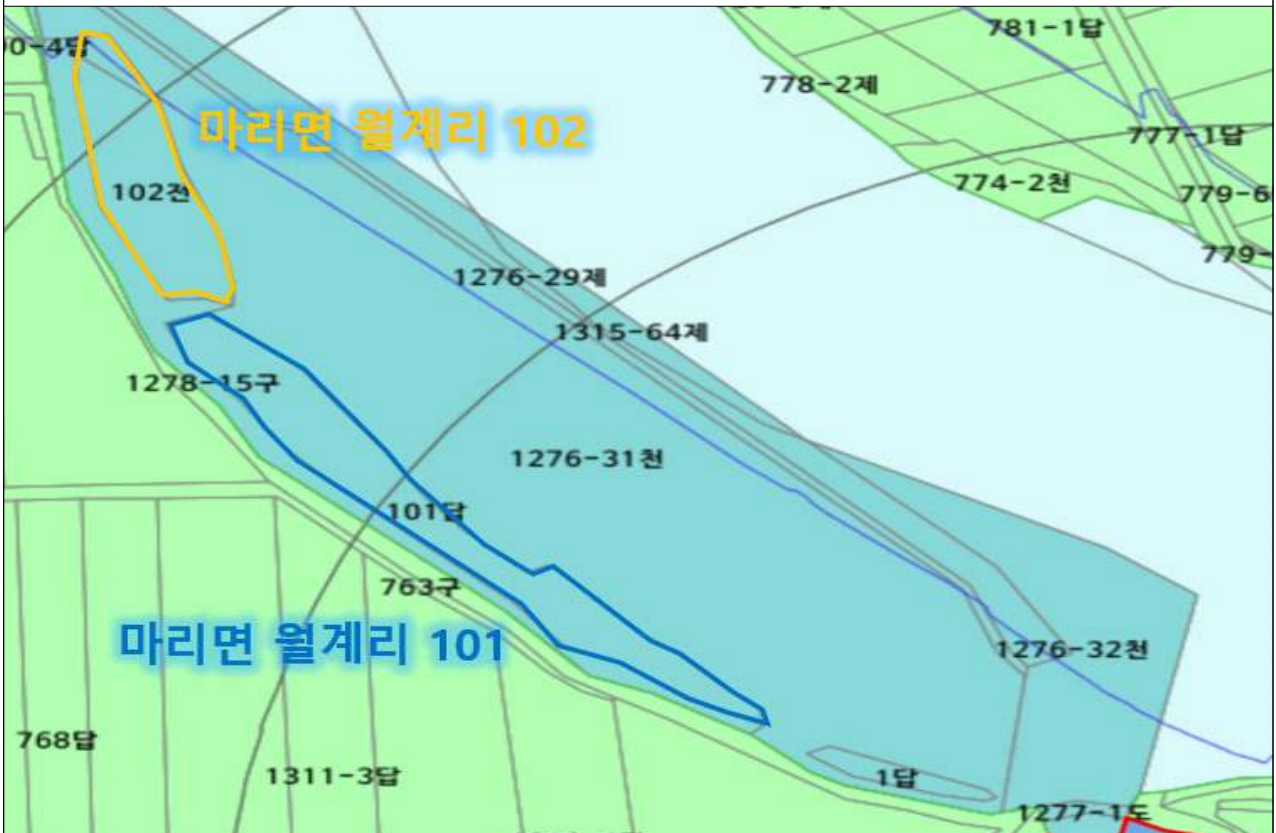
붙임1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800	
보상비	• 토지매입 보상비 등 : 100백만원 -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 ----- 2백만원 - 보상비 ----- 98백만원	100	
설계비	• 설계비 : 2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등 ----- 20백만원	20	
공사비	• 공사비 : 680백만원 - 토공 : 성토·절토·되메우기·다짐 등 ----- 150백만원 - 배수공 : U형측구, 집수정 설치 등 ----- 100백만원 - 구조물공 : 경계석, L형옹벽 설치 등 -- 150백만원 - 포장공 : 콘크리트 기초, 차선도색 ----- 50백만원 - 가설건축물(이동식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 230백만원	680	



위 치 도(마리면 월계리 101번지 등 2필지)



지 적 도



현장사진(전경)



현장사진(외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신청

의안 번호	2026 - 6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거창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인 거창국제연극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가. 공 모 명 : 202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 나. 소관부처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다. 신청기간 : 2026. 3. 18.(수) ~ 4. 3.(금) / 단체→군 * 4. 10.한 경남도 제출
- 라. 신청대상 : 대규모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 필요
- 마. 지원규모 : 총 2,000백만원(도비) ※ 도비와 군비 1:1이상 매칭 필수
- 바. 지원내용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3. 그간 추진사항

- 가. 2026. 3. 18. : 공모안내 공문 접수
- 나. 2026. 4. 9. : 공모 신청서 제출(도비 700백만원)
- 다. 2026. 4. 23. : 공모 선정(도비 600백만원)
- ※ 공모안내 공문 접수 시 제292회 임시회(3. 19. ~ 3. 25.) 직전으로 다음 일반의안 상정 회기인 금회 임시회에 공모사업 신청을 보고하게 되었음.

4. 사업개요(공모선정)

- 가. 사 업 명 :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 나. 기 간 : 2026. 7. 31.(금) ~ 8. 9.(일) / 10일간
- 다.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 600, 군 900)
- 라. 장 소 : 거창군 위천면 수송대 일원
- 마. 슬 로 건 : 자유로운 몰입, 달달한 상상
- 바. 주최/주관 : (재)거창문화재단, KBS창원방송총국 / (재)거창문화재단
- 사. 주요내용 : 개·폐막식, 개·폐막공연, 국내외 초청작 공연, 경연 공연, 프린지 공연, 포지엄, 토크, 워크숍, 체험행사 등

※ 최근 3개년 공모선정 현황

구 분	제33회(2023년)	제34회(2024년)	제35회(2025년)
사 업 비	14억원(도 5, 군 9)	14억원(도 5, 군 9)	14억원(도 5, 군 9)

□ **위 치 도**



위천면 수승대 일원

□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 현장사진**



개막공연



해외 초청작 공연



프린지 공연



부대행사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6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10.7. 만료됨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 위탁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다. 시설규모

구분	부지	건물			정원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2,201㎡	1,200㎡	1,001㎡	8명	35명	

라.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1) 운영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2) 시설물 관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물품 등

바. 위탁방법 :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회 마련
- 2)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계법령

- 1)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3호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3) 운영신고 서류 및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8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9월
- 4)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라. 소요예산(2026년) :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1)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편성

마.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1 추진 배경

- 장애인근로사업장 현 위탁기간의 위탁기간 종료 : 2026. 10. 7.
-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운영법인 모집 공고 등 절차 추진

2 관련 근거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장 이재원)
- 소재지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위탁법인 : (사)경상남도 장애인부모연대(대표자 윤종술)
- 수탁기간 : 2021. 10. 8. ~ 2026. 10. 7 / **2026.10.7. 수탁기간 만료 예정**
- 시설규모 : 건물(지상1층) / 연면적 2404.0㎡, 부지 6611.6㎡
- 예산현황 :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2026년 기준
- 위탁내역

<연도별 현황>

▶ 2013. 7. ~ 2018. 2. /4년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 2018. 10. ~ 2021. 10. /3년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 2021. 10. ~ 2026. 10. /5년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 주요사업내용
 - 포장·제작 사업 :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상품 포장 박스 제작
 - 생산 및 납품 활동 :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조·포장 업무
 -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직무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훈련 병행

☐ 종사자 현황

계	종사자				근로자		비고
	시설장	재활교사	사무원	생산판매기사	장애인	일반	
44명	1명	3명	1명	3명	32명	4명	

☐ 매출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3월)
매출액	2,232,773	2,238,166	2,005,210	2,362,461	403,038

○ 연도별 순이익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9~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누 계
금 액	95,405	40,824	41,227	56,082	346,425	579,963

○ 현금성 자산 보유현황

(2026. 5 기준/ 단위: 천원)

수익금 통장잔고 (a)	미수금 (b)	완제품 재고량 (c)	원자재 재고량 (d)	미지급액 (e)	합 계 (a+b+c+d)-e
183,772	116,075	300,786	407	153,563	447,477

☐ 운영자금 교부 및 상환 현황

(단위: 천원)

반환일자	교부액	반환액	반환잔액	비고
계	700,000	500,000	200,000	
2018.12.24.	200,000	—	—	
2019.10.08.	500,000	—	—	
2022.03.02.	—	50,000	650,000	
2023.06.02.	—	50,000	600,000	
2024.02.07.	—	50,000	550,000	
2025.02.10.	—	100,000	450,000	
2026.01.16.	—	250,000	200,000	

※ 이전 운영법인 수탁 포기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반환 조건의 운영자금 지원

□ 그간 추진 현황

- 2020. 12. : 박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보건복지부)
- 2021. 7. : 쇼핑백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보건복지부)
- 2021. 9. : 창고증축(800백만원) 및 직업재활교사 1명 충원
- 2021. 11. : 2022년 기능보강 후렉스 기계 선정/ 국도비 8억 확보
- 2022. 11. : 비가림 설치 공사 완료
- 2023. 5. : 지게차 및 1톤 트럭 구입
- 2024 . 6. : 전기화물 트럭 구입
- 2024 . 8. : 걸포장기계 및 물품결속기계 구입
- 2024. 12. : 전기증설공사 및 옥내소화전 설치 완료
- 2025. 5.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5. 10.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 2026. 6.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실시설계

4 향후계획

- 운영법인 및 기간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8월
 - 선정심의회 개최 : 2026. 9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회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9월 말

5 기대효과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기회 제공
- 자립능력배양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

가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69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의 개인 위생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거창군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나. 위탁사무

- 1)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1대
- 2)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3) 이동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및 관리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수탁자격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 43,831천원(군 43,831)

※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 재선정 추진
-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사업 : 거창군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 위탁내역

<연도별 현황>

▶ 2014. 3. 1. ~ 2016. 2. 28. / 2년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2016. 3. 1. ~ 2019. 2. 28. / 3년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2019. 3. 1. ~ 2021. 12. 31. / 2년10개월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2022. 1. 1. ~ 2023. 12. 31. / 2년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2024. 1. 1. ~ 2026. 12. 31. / 3년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사 업 비 : 43,831천원(군비) / 2026년 기준
 - 수행인력 인건비 및 이동목욕차량 1대 운영비

2 사업내용

- 대상 및 인원 : 관내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36명(실인원)
 -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욕서비스 대상자 제외
- 사업내용
 - 대상자 1인에게 월 2회 정기적 방문목욕서비스 실시
 - 목욕 전·후 체온, 혈압 측정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실시
- 장 소 : 10개면 ※ 가조면 제외
- 이 용 료 : 무료

○ 제공인력 : 11명 / 이동목욕 전담인력 1명, 노인일자리참여자 10명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연간이용인원	699	685	699	
예 산	36,000	37,300	40,685	

○ 위탁내용

- 전담인력 1명(인건비 및 운영비)
- 차량 1대

차종	규격	차량번호	연식	비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2021. 7. 차량교체

○ 활동사진



목욕서비스 및 기초건강상태 확인 서비스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1월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6.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4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 독거노인 개인위생과 심신의 건강증진
-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7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나. 위탁참여인원 : 18명(예정)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참여형 업무 수행
- 2)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3)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 103,202천원(국21,658, 도6,497, 군75,047)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합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 추진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
- 위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참여인원 : 18명(예정)
- 위탁내역

<연도별 현황>

- ▶ 2021. 1. 1. ~ 2023. 12. 31. / 3년 (사)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 2024. 1. 1. ~ 2026. 12. 31. / 3년 (사)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사 업 비 : 103,202천원(국 21,658, 도 6,497, 군75,047)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2 근무조건

- 근로내용

직무명	직무내용	참여인원	비 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14명(26)→16명(27)	2명 증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공공장소, 다중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2명	'27년 위탁추진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와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월 56시간이내(주 14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577,920원(시급 10,320원, 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1월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6. 12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수탁대상 기관 : 장애인일자리 관련 수탁 희망기관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 2027. 1월 중

4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업무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처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 불법 주차구역 관리 등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추진

가 장애인복지법

-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46~47

3-8.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특수학교 등 ※ 필요시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일 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과건	×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나. 사업수행기관 모집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위해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행

- 지자체별 일자리 배정인원, 기존 수행기관 수행 규모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 민간 수행기관 선정·관리
- 복지일자리에 참여할 신규 수행기관 모집 시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11개, 참고 p.70)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모집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서식40]) 각 1부)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
- 2)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기간 동안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선정 적정여부를 심사
 -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는 등 부적정한 운영 기관은 재선정 제외
- 3)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
- 4)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
- 5)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장과 사업 협약서[서식5] 작성 및 협약 체결
- 6)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수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배치기관 확보의 적절성, 담당인력 투입의 적절성, 일자리배정인원 참여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 7)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발 가능

라. 선정 기관 준수 사항

- 민간수행기관은 「협약서」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선정 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성과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마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69

Chapter 2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2-1.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기관

- 1)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수행기관 수행 가능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 2)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가) 시·도에서는 지역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
 - 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직접 수행 가능)
- ※ p.2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

참고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및 종류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의미함

- ①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
- ②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초·중등교육법 제56조)